

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 규정

2018.03.01. 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국제교육원 한국어연수과정 한국어교원(강사)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)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교원(강사)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
2.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
3. 정부기관,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

제3조(제출서류)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어교원(강사)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
2.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각 1부
3. 학사 이상의 전과정 성적증명서 각 1부
4. '제 2조'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(재직) 증명서 각 1부
5. 공인 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

제4조(심사) 아래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심사한다.

구분	내용	비고
1단계	서류심사	지원자격 부합 여부
2단계	면접심사	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심층 면접

제5조(위촉 절차) ① 한국어교원(강사) 위촉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위촉 해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수업에 충실치 않는 경우
2. 교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
3.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을 경우
4. 본 대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제7조(계약) ① 한국어교원(강사)로 최종 위촉된 자는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를 작성한다.

②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에 명시한다.

제8조(강사료) 한국어교원(강사)의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